

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고덕양로원의 위탁기간이 2026.3.4. 자로 만료 됨에 따라
- 나. 노인 복지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시설명 : 시립고덕양로원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및 같은 법 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
 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시립고덕양로원은 저소득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복지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 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시설보호대상 노인의 입소 및 보호
-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-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
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'시'와 '법인'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- 규 모 : 대지 21,804 m^2 , 건물 3,573 m^2 / 본관, 별관
- 주요시설 : 생활실, 상담실, 물리치료실, 강당, 사무실 등

마. 민간위탁 기간 : 5년(2026.3.5.~2031.3.4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2,275백만원('25년 기준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,017백만원, 운영비 105백만원, 사업비153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5년 제5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및 같은 법 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

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고독대응과 김미연 (☎ 2133-7181)